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41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서미화·김예지·김종민
이수진·이정문·허성무
용혜인·최혁진·이학영
손 술·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 및 권익 옹호 활동의 특성상 독립성과 역동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런데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권리 옹호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u>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u> 운영	2. ----- ----- <u>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외한다)</u> -----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